

지 하 안 전 관 리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건 설 정 책 국
(건 설 안 전 과)

1. 개정이유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건축사업은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마치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용어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한편,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명령서 서식과 지하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알리는 방법 등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여 개정된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용어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 변경(안 제7조~제14조, 제20조, 제25조, 별표 제2호, 별지 제4~5호, 제8~18호 개정).
- 나. 승인기관 및 국토부장관이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명령서 서식과 지하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별지 제21호, 제22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22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본문,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1호, 제25조제2호, 별표 2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제9조 제목,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 본문, 제10조 제목,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1호, 제25조제2호, 별표 2,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로 하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별표 2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1호, 제4장 제목, 제9조 제목,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 본문, 제10조 제목,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제11조 제목,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1호,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25조제2호, 제25조제3호, 별표 2,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각각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하고,

제8조 제목,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① ----- ----- ----- -----.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u>지하안전영향평가</u>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 <u>지하안전평가</u> ----- ----- ----- ----- -----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u>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u> 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8조(<u>착공후지하안전조사</u> 결과의 작성) ----- --- <u>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u> --- ----- ----- -----.
<신설>	제8조의2(<u>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u>

제4장 <u>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u> <u>대행</u> 제9조(<u>지하안전영향평가서</u> 등의 <u>보존기간</u>)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u>지하안전영향평가서</u>,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u>(이하 “<u>사후지하안전영</u>	<u>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u>) ① 영 제22조의2에 따른 <u>안전조치명령서</u>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u>안전조치명령</u>을 받은 자는 <u>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4장 <u>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u> 제9조(<u>지하안전평가서</u> 등의 <u>보존기간</u>) ① ----- ----- ----- ----- -----. 1. ----- <u>지하안전평가서</u>, ----- ----- <u>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u>-----<u>착공후지하안전</u>
---	---

향조사서”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서·조사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 다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3년으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

조사서-----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2. (현행과 같음)

3. -----
-----지하안전평가서
등-----
----- 지하안전평가
서등 -----

-----, ----- 착공후지하
안전조사서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판단기준) -----
-- 지하안전평가서-----

-----.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① -----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기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지하안전평가-----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지하안전평가 -----

-----.

② ----- 지하안전평가 -----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하안전평가 -----

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
에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
(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법 제30조제1
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
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하
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
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
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
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
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한다)
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
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

-----.

제13조(조사) ① -----

----- 지하안전평가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확인)
① ----- 지하
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
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 지하
안전평가등 -----
----- 지하
안전평가 -----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2. 3.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20조(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② (생략)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

1. 지하안전평가서등

2. 3. (현행과 같음)

② ----- 지하안전평가등 -----
----- 지하안전평가 -----

-----.

③ ----- 지하안전평가등 -----
--.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에 따른 <u>지하안전영향 평가서등</u> 의 보존기간 등	2. ----- <u>지하안전평가 서등</u> -----
3. 제12조에 따른 <u>지하안전영향 평가</u> 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 경·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	3. ----- <u>지하안전평가</u> -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거짓·부실 작성에 관한 판단기준(제10조 관련)

1.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이 표에서 “기초자료”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현황자료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지반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지반현황을 적절하게 조사한 것으로 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에 제시한 경우
 -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 나. 시추 조사, 지하수 조사(흐름방향, 유출량 등), 지표레이더 탐사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 다. 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2. 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 또는 협의 시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적절한 검토 또는 협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법 제19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를 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을 지하안전평가서등의 기본현황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 나. 영 제14조·제21조·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평가·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락한 경우
 - 다.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현황을 지하안전평가서등 작성 시 누락한 경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 통보서

(○○○○ 년도 공사/운영시 제○차연도 조사결과)

1.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사업명(사업유형)		
사업장소재지		
사업자(시공사)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협의기관		
승인기관		
평가 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재(변경)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년/월/일)	1차	
	2차	
	3차	
착공(예정)일(년/월/일)		
준공(예정)일(년/월/일)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공정률(%)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자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후지하안전 조사기간	전체	년 월 ~ 년 월(년)
	이번 회	년 월 ~ 년 월

나. 사업진행 현황

시설별 규모	
--------	--

-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지하안전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정률	
-----	--

-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추진경위	
------	--

- ※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하안전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지하안전평가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가. 지하안전평가 실시내용

구분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결과			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	조치 사항
		지하현황			지하안전예측						
항목	세부 항목	조사 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확보 방안 수립 전	확보 방안 수립 후	조사 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지하수조사											
지하 건전성조사											
그 밖의 항목											

- ※ 지하안전평가서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나.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조치사항	지하침하(함몰)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지반침하(함몰)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주변 지반침하(함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평가결과	
------	--

※ 지하안전평가서에서 제시된 지하수위, 지하 건정성 등의 지하현황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지하안전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협의내용 관리 현황	
---------------	--

※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지하안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일	사업계획 변경내용	지하안전방안 마련 내용

※ 제7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방안 마련 내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	조사일시	공정률 (%)	이행내용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협의내용 이행 현황					

※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지하수위, 지하 건정성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조사일시	승인 또는 협의기관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	비고

6.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 종합평가

--

※ 지하안전평가서의 지하현황예측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를 토대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등) 등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7. 부록

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현황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조사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직책	자격 및 면허
총괄					
고급	토목				
	:				
중급	토목				
	:				
초급	토목				
	:				

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규등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신규,[]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사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처리기관 (시·도)		처리기관 (시·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대장

등 록 번 호	등록 제 호	등 록 일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한자)	생 년 월 일	
사무소소재지			
관련면허업종	제 호	겸 업 사 항	
자 본 금			
납 입 자 본 금	변 경 연 월 일	실 질 자 본 금	
기 재 사 항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연 월 일	

등록번호 제 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등록 분야
5. 등록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지하안전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① 상호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및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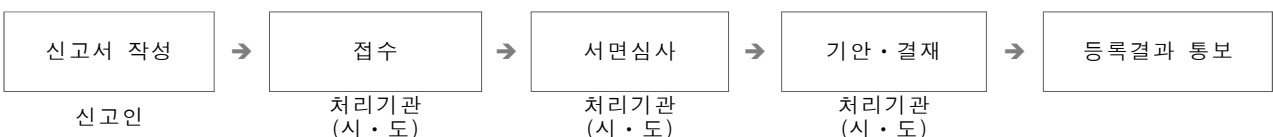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작성방법

① 상호란, ② 대표자란, ③ 사무소 소재지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illegible]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조사대장

[illegible]

(앞쪽)

조사공무원증	
사진 (3.5cm×4.5cm)	
소 속	
직 급	
성 명 (세)	
생년월일	

60mm×90mm[백상지(150g/㎡)]

(뒤쪽)

번 호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기관의 업무현황이나 관련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1.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지하안전평가기관의 업무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지하안전평가 등 대행실적보고서

등록 번호	기관 (업체)명	평가구분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장 위치	굴착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대행비용 (백만원)	대행기간	비고
							최대 굴착깊이	용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년도 지하안전평가 대행 실적을 제출합니다.

붙임 지하안전평가서등 1부,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실적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및 등록일					
사업구분	[] 지하안전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사용용도			제출처		
실적확인 내용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 . . ~ . . .	부수	부	
	대상사업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실적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등록번호					등록일			
사업구분		☐ 지하안전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용도					제출처			
번호	대상 사업	사업명	기본현황			사업 규모		수행금액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 위치	굴착깊이	용적	
1								
2								
3								
책임(참여) 기술자		성명	생년월일			참여구분		과업참여기간
이하여백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장 직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담당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illegible]

안전조치명령서

명령받을 사 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지하개발사업 또는 지하시설물	명 칭			
	위 치			
안 전 조 치 명령 사유				
안 전 조 치	안전조치 사항			
	안전조치 방법			
	안전조치 기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또는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가 개발·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명하오니 이행하시고, 첨부한 안전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안 전 조 치 결 과 통 보 서

통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지하개발사업 또는 지하시설물	명 칭	
	위 치	
안전조치 결 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안전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

년 월 일

통 보 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